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중 “25명”을 “3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 4 조 (사무직원의 정수)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u>25명</u>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 4 조 (사무직원의 정수)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u>39명</u>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p>